

KLSI

ISSUE PAPER

제 155호
2021-14호
(2021.9.15)

www.ksli.org

프리랜서 노동실태와 특징 II - 일의 형태와 불안정성 -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박관성 | 전북노동고용포럼 위촉연구원

[목차]

- I. 머리말
- II. 프리랜서 일자리와 형태들
- III. 프리랜서 노동실태와 특징
- IV. 맺음말

[별첨자료] 설문·사례조사 요약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50 (골든브릿지빌딩) 3층

전화 02)393-1459

팩스 02)393-4449

www.facebook.com/ksli.org/

〈요 약〉

- 첫째, 프리랜서 일(일감, 프로젝트)의 선택은 개인 네트워크 활용(46.3%)이 가장 많았고, 일감 선택의 기준은 보수(47.2%), 업무 내용(26.3%), 작업기간(10.7%) 등의 순이었음. 프리랜서 월 평균 보수는 183만원(정규직의 54.4% 수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 미달 비율 33.6%)이었고,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33.3시간(52시간 이상 16%)으로 확인됨.
- 둘째, 프리랜서가 노동시장에서 현재 일을 선택한 기준은 자유로운 시간활용(39.7%), 직업 특성(22.5%)이 가장 많았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소유자는 31.3%였으나 절반(51.5%) 가량은 자격증 없이 일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프리랜서 노동시장의 평균 경력은 5.6년(여성 5.4년, 남성 6.1년)이었음.
- 셋째, 프리랜서는 향후 본인 일자리 전망을 긍정적(지속 가능 72.5%)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직 의향도 낮은 것(28.5%)으로 나타남. 한편 이직 의향자는 직업 불안정(38.1%), 낮은 보수(26.7%), 열악한 근무환경(7.1%), 과도한 작업량(4.6%)과 같이 비자발적 요인이었음. 코로나19 시기 일감이나 소득 증감 조사 결과 거의 대부분 일감이 감소(감소 70%, 변화 없음 20.4%, 증가 9.2%)한 것으로 확인됨.
- 넷째, 프리랜서 노동환경과 일의 만족도는 평균 55.6점(100점 만점 기준)이었고, 자율성 및 권한(67.6점), 적성 및 일의 흥미(64.6점), 일 환경(60.2점), 노동시간(57.1점), 일과 생활 균형(57점), 개인 발전 가능성(56.3점), 노동강도(54.7점), 업무 평가 시스템(54.4점), 소득(45.1점), 직업 안정성(38.6점) 순이었음.
- 다섯째, 프리랜서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클라이언트로부터 부당대우 경험(인권침해)이 43.5%(폭언 13.2%, 괴롭힘 10.2%, 성희롱 4.3%, 폭행 1.7%) 정도로 높은 상황이었고, 부당대우 발생 시 3분의 2 이상은 ‘그냥 참고 넘김’(66.2%)이라고 응답했음. 한편 프리랜서들은 이해대변 조직 기구로서 노동조합(35.2%)과 협회(33.8%), 온라인 커뮤니티(21.7%) 순으로 선호도를 보였음.
- 여섯째, 프리랜서의 제도적·정책적 주요 영역별 개선과제(15개) 의견은 △법률지원 시스템 마련(81.1점), △경력인정 시스템 마련(80.8점), △표준계약가이드 마련(78.1점), △세무상담지원(77.5점), △근로자성 인정(77.3점), △사회보험 지원(76.8점), △시장 모니터링(74.2점), △계약 및 업무수행 지원(71.2점) 등의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음.

프리랜서 노동실태와 특징¹⁾

- 일의 형태와 불안정성 -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박관성 | 전북노동고용포럼 위촉연구위원

I. 머리말

- 전 세계적으로 ‘비표준화된 계약’과 ‘고용방식’이 진행되면서 노동시장은 이전과 다른 변화가 확인되고 있음. 주로 특수고용이나 플랫폼노동 그리고 독립노동자(계약자)와 같은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가 주목받고 있음. 이들 집단은 우리 사회의 기존 법제도(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법, 사회보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함.
 - 특히 비임금노동자로 구분·분류되는 ‘프리랜서’는 주로 소수의 고정적인 클라이언트와 주로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 수입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었음. 그러나 이전과 달리 일의 방식이 변화되고 플랫폼이 매개되면서 다수의 불특정 클라이언트와 일을 하는 형태도 나타나고 있음. 물론 프리랜서와 같은 새로운 노동방식과 관련하여 열악한 노동상황이나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의 목소리가 국제적으로도 제기된바 있음(ILO, 2015; OECD, 2014).²⁾
- 국내 프리랜서 연구는 규모 추계, 제도와 정책 검토, 분야별 실태조사들이 있음. 기존 프리랜서 선행연구(김종진, 2018; 이승렬·김삼수 외, 2013, 이승렬·이용관 외, 2018; 이승윤 외, 2019; 신태중 외, 2019)들은 다양한 직업·직군 대상을 통한 정책과제나 사회보장 혹은 노동권익 문제를 다수고 있음.
 - 산업구조와 기술발전 과정에서 새롭게 출현하는 ‘프리랜서 일자리’와 관련하여 규모, 양적 조사 및 사례조사 등 다양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프리랜서는 직업적 선호도나 업무 자율성이 높은 장점이 있지만, 다양한 일자리 문제점(불안정한 소득, 낮은 보수, 일감

1) 이 자료는 김종진·박관성 외(2020), 『프리랜서 노무형태 파악 위한 실태조사』, 유니온센터·고용노동부 자료를 중심으로 요약 재구성한 것임. 2021년 하반기 두 차례 발표된 프리랜서 관련 첫 번째 글은 <프리랜서 노동실태와 특징1 - 프리랜서 규모 추정과 노동상황>(2021.8.17.)을 참조할 수 있음.

2) ILO(2015). Non-standard forms of employment. Report for discussion at the Meeting of Experts on Non-Standard Forms of Employment(Geneva, 16-19 February 2015), OECD(2014). OECD Employment Outlook (Paris, OECD).

단절, 교육훈련 미비)이 지적되고 있고, 법제도 보호의 밖(불공정 거래, 권익 침해, 사회보험)에 있는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음.

- 국내 약 17곳 지방정부에서 프리랜서 권익·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제도화 논의가 더딘 상황임(별첨자료 3] 참조). 이 글은 2020년 프리랜서 대상 설문조사와 사례조사 등을 통한 노동실태와 유형별 특징을 정리한 것임.³⁾ 프리랜서 직업과 일하는 방식·특성을 기준으로 다섯 가지 이념형(예술인형, 특수고용형, 플랫폼노동형, 독립자유계약형, 개인사업자형)으로 구분하여 검토했음.

II. 프리랜서 일과 형태들

1. 프리랜서 일 선택과 이동

- 이전에 어떤 일을 하다가 현재의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음. 첫째, 조사 결과 프리랜서 절반 이상이 일경험이 없거나 고용보장과 소득수준이 낮은 비정규직 일자리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됨. 프리랜서의 56%는 임금노동자(정규직 36.1%, 비정규직 19.9%)였거나, 3분의 1(32.8%)은 일 경험이 없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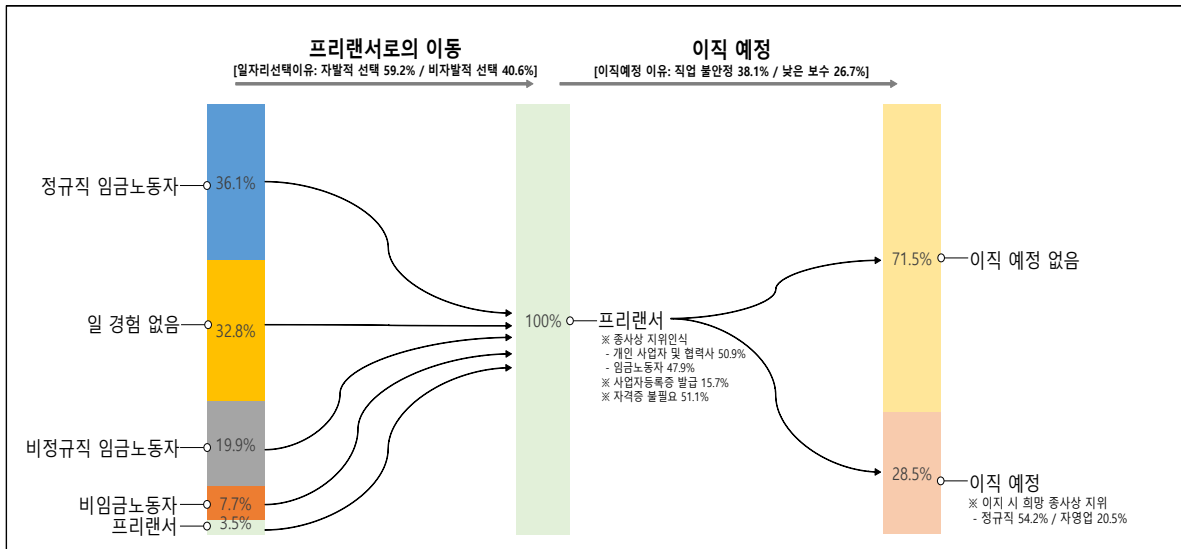
〈표 1〉 프리랜서의 바로 직전 일 경험 여부와 종사상 지위 및 고용형태

		바로 직전의 종사상 지위				일경험 없음	향후 희망 종사상 지위				일자리 지속성 이직 희망자	
		임금노동자		비임금노동자			자영업	고용주	정규직	무기계약직	지속 가능 예상	이직 의향자
		정규직	비정규직	비임금노동자	프리랜서							
	전체	36.1	19.9	7.7	3.5	32.8	20.5	11.4	54.2	13.9	72.5	28.5
노동 형태	예술인형	15.9	15.9	4.3	5.8	58.0	20.0	13.3	66.7	0.0	63.8	21.7
	특수형태고용형	37.0	20.6	7.7	4.0	30.7	25.0	8.7	53.8	12.5	75.1	30.4
	플랫폼형	32.6	25.1	9.1	2.3	30.9	16.4	9.1	56.4	18.2	77.7	32.0
	독립자유계약형	38.1	18.9	7.1	2.6	33.3	12.5	18.8	62.5	6.3	68.9	27.6
	개인사업자형	50.0	12.5	10.0	5.0	22.5	16.1	10.6	59.4	13.9	71.3	22.5
직업	관리전문직	35.8	19.5	6.8	3.2	34.8	29.0	12.9	44.1	14.0	70.1	26.7
	비전문직	37.0	20.9	9.9	4.1	28.1	28.4	13.4	46.3	11.9	78.1	32.9
부업 여부	투잡	36.8	20.2	9.3	4.9	28.7	18.0	10.7	56.8	14.6	75.7	27.9
	전업	35.9	19.8	7.2	3.0	34.1	31.7	12.5	48.1	7.7	71.4	28.7
성별	남성	40.2	22.3	9.1	4.1	24.3	13.6	10.7	58.0	17.8	70.4	31.4
	여성	34.0	18.6	7.0	3.1	37.3					73.6	27.0

3) 이 조사는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1개월간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되었고, 설문문항은 △주 활동분야(13문항), △경제활동 상태(8문항), △계약방식(7문항), △노동환경(18문항), △사회보장과 건강(11문항), △노동인식(21문항)으로 크게 노동조건, 노동인권, 사회보장, 정책욕구관련 분야로 조사되었음. 설문조사 표본 총 1,015명(서울지역 5414명, 비서울지역 571명) 중 유효표본 985명을 분석(성별: 여성 644명, 남성 341명, 혼인상태: 비혼·미혼 504명, 연령대: 20대 199명, 30대 340명, 40대 286명, 50대 이상 160명, 가구주: 478명)에 활용함.

- 프리랜서 노동형태와 유형별로 구분하면, 예술인형은 일 경험 없음(58%)과 정규직(15.9%), 특수형태고용형은 정규직(37%)과 일 경험 없음(30.7%), 플랫폼형은 정규직(32.6%)과 일 경험 없음(30.9%), 독립자유계약형은 정규직(38.1%)과 일 경험 없음(33.3%), 개인사업자형은 정규직(50%), 일 경험 없음(22.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 프리랜서 노동시장 일자리 이동 모형



- 둘째, 프리랜서 일자리 선택은 자발적 선택(59.4%)과 비자발적 선택(40.6%) 요인이 병존하고 있었음. 10명중 4명(39.7%)이 자유로운 시간활용(39.7%)이 일자리 선택 요인이었음. 특히 경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자유로운 시간활용 선택 비율이 다른 집단들보다 높았음.
- 노동형태별 프리랜서 일자리 선택 이유는 예술인형은 직업특성(60.9%), 자유로운 시간활용(17.4%), 특수형태고용형은 자유로운 시간활용(36.4%), 직업특성(23.5%), 플랫폼형은 자유로운 시간활용(47.4%), 직업특성(13.1%), 독립자유계약형은 자유로운 시간활용(42.3%), 직업특성(18.9%), 개인사업자형은 자유로운 시간활용(46.3%), 직업특성(20%) 때문이었음.

<표 2> 프리랜서 일자리 선택 이유(단위: %)

		자발적 일자리 선택(59.2%)							비자발적 일자리 선택(40.6%)				
		자유로운 시간활용	일거리 찾기가 쉬워서	가사노동형	수입 증대	고소득 일자리	학업을 위한 임시 일자리	업무 경험과 과업을 쌓기 위해	임금노동자 일자리 부족	조생활 미적응	직업 특성	건강상 문제	기타
전체		39.7	3.2	6.5	1.8	3.7	1.6	2.7	8.1	6.8	22.5	2.6	0.6
노동형태	예술인형	17.4	0.0	1.4	2.9	1.4	0.0	1.4	5.8	7.2	60.9	0.0	1.4
	특수형태고용형	36.4	1.7	8.3	1.4	5.4	2.3	3.4	8.9	5.4	23.5	2.0	1.1
	플랫폼노동형	47.4	8.6	2.3	2.3	4.0	2.3	2.3	9.1	6.3	13.1	2.3	0.0
	독립자유계약형	42.3	3.2	7.1	2.2	1.9	1.0	2.6	8.7	8.0	18.9	3.8	0.3

		자발적 일자리 선택(59.2%)							비자발적 일자리 선택(40.6%)				
		자유로운 시간 활용	일거리가 쉬워서	가사노동행	수입대	고소득 일자리	학업을 위한 임시 일자리	업무과로를 경감시키기 위해	임금노동자리 부족	조생활 미적응	직업특성	건강상 문제	기타
직업	개인사업자형	46.3	1.3	10.0	0.0	3.8	1.3	2.5	2.5	8.8	20.0	3.8	0.0
	관리전문직	36.5	2.9	6.6	1.4	2.7	1.7	2.9	8.4	6.9	26.1	3.0	0.7
	비전문직	47.3	4.1	6.2	2.7	5.8	1.4	2.4	7.5	6.5	14.0	1.7	0.3
부업 여부	투잡	42.1	2.0	6.1	2.8	2.4	1.6	3.6	7.7	7.7	23.1	0.8	0.0
	전업	38.9	3.7	6.6	1.5	4.1	1.6		8.3	6.5	22.4	3.3	0.8
성별	남성	40.2	22.3	100.0	2.9	5.0	0.9		24.3	9.1	4.1	4.1	0.3
	여성	34.0	18.6	100.0	1.2	3.0	2.0		37.3	7.0	3.1	1.9	0.8

- 셋째, 프리랜서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높고 잠재적 실업에 노출된 상황에서 안정적인 임금 노동자로의 일자리 이동 의견도 높았음. 프리랜서의 3분의 1(27.5%)은 향후 본인이 일하고 있는 분야가 지속 불가능 하다고 예상하고 있었음. 또한 3분의 1(28.5%)은 다른 직종이나 직무로 이직을 원하고 있었음. 이직 이유는 직업 불안정(38.1%), 보람이 없음(27.0%), 보수가 적어서(26.7%) 순이었음.⁴⁾
 - 다른 일자리로의 이직 희망자 2명 중 1명(52.7%)은 현재 프리랜서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자 할 때 정규직 일자리로 일하기를 원하고 있음. 이는 프리랜서의 불안정한 노동 환경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음. 프리랜서 4명 중 1명(25.1%)은 현재의 일 이외의 다른 일(투잡 등)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소득이 적은 집단이 소득이 높은 집단보다 부업하는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음.

2. 프리랜서 일 선택과 방식

- 첫째, 프리랜서 대부분은 일감 수주로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고, 성별 및 노동형태별로 차이가 있음. 프리랜서 대부분 지인 추천(23.6%)이나 개인 네트워크(22.7%)를 통해 일을 수주하고 있으며, 플랫폼(잡 포털 사이트 +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일감 수주는 18.5%인 것으로 나타났음.
 - 프리랜서 일감 수주 방식은 성별과 노동유형별로 차이가 있음. 남성은 개인 네트워크(24.9%), 지인 추천(23.8%), 여성은 지인 추천(23.4%), 개인 네트워크(21.6%) 순임.⁵⁾ 노동형태별 일감 수주 방식은 예술인형은 개인 네트워크(30.4%), 지인 추천(29%), 특수고용형은 지인 추천(31.8%), 협회 등(28.7%), 플랫폼형은 잡 포털 사이트(66.3%), 어플리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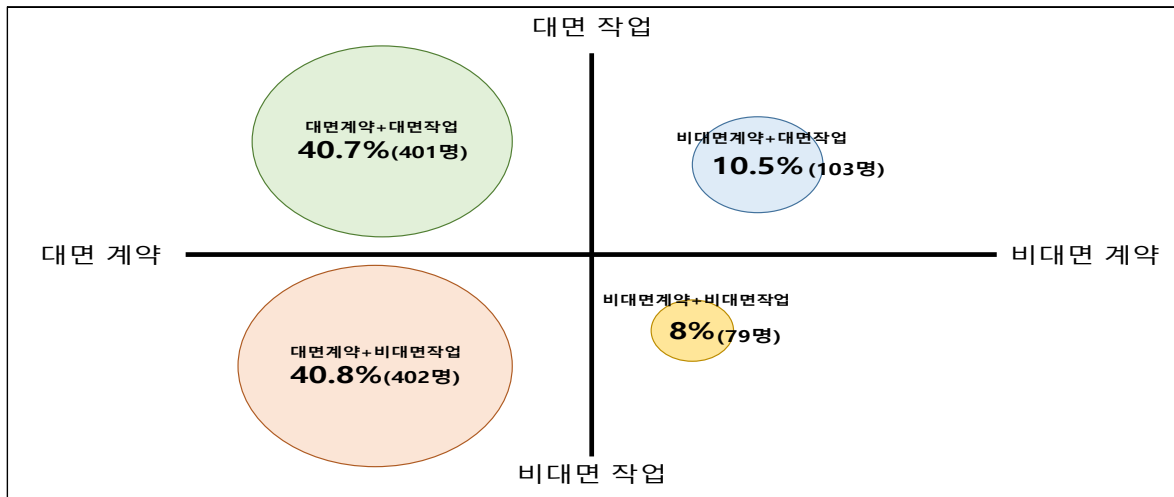
4) 이직 희망 프리랜서의 주된 업무특성은 '직업불안정'(38.1%), '보수가 적어서'(26.7%), '작업 물량감소'(9.3%) 순임.

5) 경력별 프리랜서 일감 수주 방식은 경력 1년 미만은 협회 등(19.4%), 협회 등(19.4%), 경력 1년~3년 미만은 지인 추천(27.4%), 개인 네트워크(19%), 경력 3년~5년 미만은 개인 네트워크(22.6%), 지인 추천(20.9%), 경력 5년~10년미만은 개인 네트워크(31.1%), 지인 추천(22.6%), 경력 10년 이상은 개인 네트워크(26.5%), 지인 추천(24.9%) 순임.

선(33.7%), 독립자유계약형은 개인 네트워크(33.3%), 지인 추천(28.2%), 개입사업자형은 개인 네트워크(36.3%), 협회 등(22.5%) 순임.

- 둘째, 프리랜서 일 선택의 중요 기준은 경제적인 이유였고, 보수(47.2%)와 업무 내용(26.3%)이 핵심적 요소로 확인됨. 노동형태별 일감 선택 시 중요 요인은 예술인형은 보수(42%)와 업무 내용(29%), 특수고용형은 보수(46.7%)와 업무 내용(28.9%), 플랫폼형은 보수(58.3%)와 업무 내용(17.1%), 독립자유계약형은 보수(44.2%)와 업무 내용(27.9%), 개인사업자형은 보수(41.3%)와 업무 내용(26.3%) 순임.

[그림 2] 프리랜서 계약방식 및 작업방식 유형별 구분



주 : 1) 계약방식(일감 수주방식) 구분

- ① 대면 계약(81.5%) : 에이전시(4.3%)+협회 등(17.1%)+개인네트워크(22.7%)+지인추천(23.6%)+온라인커뮤니티(11.2%)+기타 일감 수주(2.7%)
- ② 비대면 계약(18.5%) : 잡 포털 사이트(12.4%)+어플리케이션 일감 수주(6.1%)

2) 작업방식(작업 공간) 구분:

- ① 대면 작업: 발주처 및 고용업체 제공 작업실 등(발주처·고용업체 제공작업실+방문판매 등+공연장·무대 등+기타)
- ② 비대면 작업: 개인 소유 작업실(주택+개인사무공간+공유오피스+카페 등)

- 셋째, 프리랜서의 자유로운 직업적 이미지와 달리 작업 결과물을 비롯하여 노동시간, 품질 관리 등 직·간접적 노동통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확인됨. 프리랜서 대부분 대면 계약과 대면 작업방식 및 비대면 작업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음. 따라서 전통적인 고용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지시명령 및 통제의 유형과는 차이가 있지만 ‘준 통제’(quasi-surveillance) 형태가 우월적 지위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성들이 있음.

- 프리랜서 계약 미체결 비율은 절반(49.2%) 정도였고, 노동시장에서 저소득 및 여성(남성 53.1%, 여성 47.2%) 일수록 계약 체결이 낮았음. 노동형태별 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예술인형 46.4%, 특수형태고용형 57.0%, 플랫폼형 54.9%, 독립자유계약형 43.6%, 개인사업자형 46.3%였음.

Ⅲ. 프리랜서 노동실태와 특징

1. 프리랜서 소득 및 경력

- 프리랜서의 일자리 불안정성은 소득 단절이나 저소득 문제와 연동되어 있음. 2020년 하반기 프리랜서 소득 수준은 월 183만원으로 기존 정규직 대비 54.5%에 불과한 수준임. 2020년 최저생계비 약 100만원 이하의 프리랜서가 33.6%인 것으로 볼 때 저소득 문제가 확인되고, 여성, 경력 3년 미만, 예술인 프리랜서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음.⁶⁾
 - 프리랜서 월 소득 수준은 기존 노동시장과 동일하게 성별 격차(남성 223만원, 여성 162만원)가 확인되며, 노동형태별 프리랜서 월 소득수준은 예술인형(134만원), 독립자유계약형(160만원), 플랫폼형(172만원), 개인사업자형(194만원), 특수고용형(214만원) 순으로 나타났음.
- 한편 프리랜서 평균 경력은 5.6년(예술인형 7년, 특수고용형 5.9년, 플랫폼형 4.3년, 독립자유계약형 5.8년, 개인사업자형 5.8년)이었고, 1주일 평균 노동시간은 33.3시간(예술인형 31.6시간, 특수고용형 32.8시간, 플랫폼형 33시간, 독립자유계약형 33.9시간, 개인사업자형 35시간)이었음.
 - 프리랜서 노동시간은 ‘전업’(29.9시간)보다 ‘투잡’ 형태가 1.5배 이상(43.6시간) 더 긴 편이었고, 여성(29.4시간)보다 남성(40.6시간)이 더 긴 편이었음. 또한 관리직·전문직 형태의 일자리(31.4시간)보다 비전문직 형태의 프리랜서 일자리(37.8시간)의 노동시간이 더 긴 편임.

〈표 3〉 프리랜서 소득, 경력, 노동시간(단위: %, 만원, 년, 시간)

		소득구간별 분포(%)					평균 월소득 (만원)	평균 경력 (년)	1주 노동 시간
		100만원 미만	100~200 만원미만	200~300 만원미만	300~400 만원미만	400만원 이상			
전체		33.6	21.5	21.1	13.2	10.5	183	5.6	33.3
성별	남성	25.4	17.4	22.9	16.8	17.4	223	6.1	40.6
	여성	38.0	23.6	20.2	11.4	6.9	162	5.4	29.4
부업 여부	투잡	32.6	20.1	25.5	13.8	7.9	178	5.8	43.6
	전업	34.0	21.9	19.7	13.1	11.4	184	5.6	29.9
노동 형태	예술인형	50.8	20.0	16.9	9.2	3.1	134	7.0	31.6
	특수형태고용형	26.7	19.5	23.5	15.4	14.8	214	5.9	32.8
	플랫폼노동형	29.8	28.7	21.1	13.5	7.0	172	4.3	33.0
	독립자유계약형	40.9	18.9	19.9	12.5	7.8	160	5.8	33.9
	개인사업자형	30.7	25.3	18.7	9.3	16.0	194	5.4	35.0
직업	관리전문직	37.6	20.9	20.0	12.7	8.9	172	6.0	31.4
	비전문직	24.3	22.9	23.9	14.6	14.3	208	4.9	37.8

6) 프리랜서 보수 지급 방식은 불안정 지급 형태(작업 완료 후 전액 지급 39.5%, 결과물 발생 수익 일정 비율 분배 17.3%)가 다수였음. 프리랜서 소득의 원천징수자 비율은 10명 중 6명(59.9%) 정도였고, 세금 계산서 발급 비율도 일부(5.8%) 되었음.

2. 프리랜서 교육훈련, 에이전시

- 프리랜서 일을 전문직 형태로만 구분하는 기존 논의가 개념적 구분은 현실과 차이가 매우 큼. 영미 국가들에서 주로 프리랜서를 숙련이 높은 전문직(skilled professional)으로 구분하는 편이나 실제 현실에서는 자격이나 전문 교육 훈련제도와 불일치한 일자리들도 많은 상황임.
- 프리랜서 다수는 정규 교과과정 이수 필요(55.1%)나 민간 사설 교육과정 이수(41.8%)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프리랜서 활동을 위해 자격증이 필요한 직무 중 36.0%(임금노동자 20.6%)는 직무 수행을 위한 자격 입직 효과만을 가지고 있었음. 프리랜서 활동을 위해 31.3%는 국가·민간 자격증이 필요하지만(국가공인 자격증 17.7%, 민간자격증 13.6%), 51.1%는 자격증이 꼭 필요한 일이 아닌 상황이었음.

〈표 4〉 프리랜서 활동 위한 교육훈련 경험

		정규 교과과정 이수 완료자		정부·지자체 교육과정 이수 완료자		민간 사설 교육과정 이수 완료자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체	전체	446	55.1	184	18.7	412	41.8
성별	남성	120	46.7	58	17.0	115	33.7
	여성	326	59.1	126	19.6	297	46.1
부업	부업	128	60.1	62	25.1	111	44.9
	전업	318	53.4	122	16.5	301	40.8
노동형태	예술인형	42	73.7	9	13.0	20	29.0
	특수형태고용형	151	51.9	79	22.6	173	49.6
	플랫폼노동형	73	52.9	34	19.4	71	40.6
	독립자유계약형	141	54.7	39	12.5	110	35.3
	개인사업자형	39	60.0	23	28.8	38	47.5
직업	관리전문직	384	62.1	134	19.3	282	40.7
	비전문직	62	32.5	50	17.1	130	44.5

- 프리랜서 노동시장 특징 중 일감 중개나 관리 형태의 에이전시 여부가 독특한 현상 중 하나임. 조사 결과 프리랜서 중 60.9%가 에이전시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혹은 가이드라인을 제공 받고 있었음. 에이전시로부터의 업무통제는 예술인형은 46.7%, 특수고용형은 57.3%, 플랫폼형은 62.5%, 독립자유계약형은 64.7%, 개인사업자형은 73.7%인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프리랜서의 일하는 방식은 여러 일을 동시에 수행(multitasking)하는 특성이 확인되고 있음. 한 번에 하나씩 순차적으로 일을 하기도(42.7%) 하지만, 직업 특성상 동시에 여러 일을 수행(40.3%)하기도 함.⁷⁾ 예술인형(46.4%)과 특수고용형(43.3%)은 동시에 여러 일

7) 프리랜서 중 58.8%는 월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으며, 41.2%는 일/건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었음. 경력별 프리랜

진행 비율이 높고, 플랫폼형(40.6%), 독립자유계약형(48.4%), 개인사업자형(47.5%)은 한번에 하나씩 순차적 일 방식이 높았음.

2. 프리랜서 노동환경 만족도

- 프리랜서 노동환경 만족도는 평균 55.6점이며, 자율성 및 권한(67.6점), 적성 및 흥미 일치도(64.6점), 일하는 환경(60.2점) 항목의 만족도가 높고, 보수(45.1점)와 직업 안정성(38.6점)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음. 남성은 자율성 및 권한(66.7점), 적성 및 흥미 일치도(62.8점), 여성은 자율성 및 권한(68점), 적성 및 흥미 일치도(65.6점)가 높았음.
- 노동형태별 프리랜서 만족도는 예술인형은 적성 및 흥미 일치도(77.2점), 자율성 및 권한 만족도(70.3점), 특수고용형은 자율성 및 권한(65점), 적성 및 흥미 일치도(62.9점), 플랫폼형은 자율성 및 권한(65.1점), 노동시간(58.6점), 독립자유계약형은 자율성 및 권한(70.3점), 적성 및 흥미 일치도(67.2점), 개인사업자형은 자율성 및 권한(71.3점), 적성 및 흥미 일치도(66.3점)가 높게 나타났음.

〈표 5〉 프리랜서 일자리 및 노동환경 만족도(2020, 단위: 0점~100점)

		종합 만족도	보수 만족도	직업 안정성 만족도	노동 시간 만족도	일하는 환경 만족도	일·생활 균형 만족도	개인의 발전 가능성	자율성 및 권한 만족도	노동 강도 만족도	적성 및 흥미 일치도	업무 평가 시스템 만족도
전체		55.6	45.1	38.6	57.1	60.2	57.0	56.3	67.6	54.7	64.6	54.4
노동 형태	예술인형	54.3	38.0	30.4	48.2	58.3	52.5	60.1	70.3	54.0	77.2	54.3
	특수형태고용형	55.2	48.4	38.9	57.9	58.1	56.9	55.7	65.0	54.3	62.9	54.4
	플랫폼형	53.5	44.7	39.4	58.6	58.1	56.4	51.3	65.1	53.1	57.9	50.4
	독립자유계약형	56.6	42.9	38.1	57.1	63.2	57.8	57.4	70.3	56.1	67.2	55.4
	개인사업자형	58.6	46.6	44.1	58.4	64.1	59.4	62.2	71.3	55.3	66.3	58.8
직업	관리전문직	56.6	44.4	36.9	57.4	62.0	58.8	58.6	69.1	55.7	67.8	55.7
	비전문직	53.0	46.7	42.6	56.4	56.1	52.8	50.7	64.0	52.5	57.1	51.3
성별	남성	53.4	42.4	36.8	54.6	57.4	53.2	53.7	66.7	54.3	62.8	52.3
	여성	56.7	46.6	39.5	58.5	61.7	59.0	57.6	68.0	55.0	65.6	55.4
부업 여부	투잡	54.7	43.2	34.9	57.1	58.4	56.7	54.3	68.5	55.6	65.0	53.3
	전업	55.9	45.8	39.8	57.1	60.8	57.1	56.9	67.2	54.4	64.5	54.7

- 프리랜서 절반(48.8%)은 자택 혹은 별도의 작업 가능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37.7%는 클라이언트 사업장(발주업체 제공 작업장 16.9%, 업체 제공 작업장 20.8%)에서 일하고 있었음. 주된 작업공간은 예술인형은 공연장, 무대 등(37.7%)과 자택(31.9%)이었고, 특수

서 월단위 계약비율은 1년 미만 52.5%, 1년~3년 미만 60.9%, 3년~5년 미만 59.7%, 5년~10년 미만 55.6%, 10년 이상 66.3%임. 노동형태별 프리랜서 월단위 계약비율은 예술인형 41.8%, 특수형태고용형 65.3%, 플랫폼형 60.5%, 독립자유계약형 55.1%, 개인사업자형 55.7%임.

고용형은 업체 제공 작업장(44.7%)과 발주업체 제공 작업장(40.7%), 플랫폼형은 자택(32%)과 업체 제공 작업장(25.1%), 독립자유계약형은 자택(65.7%)과 개인 사무공간(21.5%)으로 각각 차이가 확인됨.

- 프리랜서의 사회안전망 문제는 제도적 해결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제도 밖의 노동문제가 노출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로 프리랜서 3분의2 이상(70.2%)이 일감이 감소하였으나,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 수혜자는 3분의 1(29.1%)에 불과했음. 한편 조사대상 프리랜서의 약 4%는 지난 3년간 현재 일로 인해 정신질환 관련 병원치료를 받았으며, 20.4%는 신체적·육체적 질환 관련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 됨.
- 그러나 프리랜서의 사회보험 및 민간보험 미가입 비율은 5명 중 1명(20.4%)이었고, 4대 사회보험(고용 90.3%, 국민 64.1%, 건강 26.4%, 산재 75.2%) 미가입 상태가 높음. 이런 이유로 프리랜서 10명 중 7명 이상(76.6%)이 민간보험에 가입한 상황임. 프리랜서 중 특수고용형(16.3%)과 개인사업자형(12.5%)은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모두 가입 비율이 낮은 집단이었음.

〈표 6〉 프리랜서 사회보험 및 민간보험 미가입 현황(2020, 단위: %)

		계	미가입자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민간보험
전체		20.4	90.3	64.1	26.4	75.2	23.4
성별	남성	29.9	88.9	62.5	24.0	75.1	33.1
	여성	15.4	91.0	64.9	27.6	75.3	18.2
소득	100만원 미만	23.8	93.4	76.3	34.1	76.9	26.3
	100~200만원 미만	21.6	87.7	61.3	24.5	72.1	26.0
	200~300만원 미만	21.9	90.5	61.2	23.4	76.1	25.4
	300~400만원 미만	12.7	87.3	64.3	24.6	74.6	15.1
	400만원 이상	10.0	88.0	39.0	11.0	77.0	11.0
부업 여부	부업	18.6	85.0	59.1	22.3	72.5	23.1
	전업	21.0	92.0	65.7	27.8	76.2	23.4
노동 형태	예술인형	20.3	95.7	75.4	39.1	68.1	21.7
	특수형태고용형	16.3	87.7	61.9	23.5	74.2	19.5
	플랫폼형	24.6	90.9	66.9	29.1	75.4	29.1
	독립자유계약형	24.7	91.7	68.6	26.9	76.3	27.2
	개인사업자형	12.5	90.0	40.0	20.0	81.3	13.8
직업	관리전문직	19.3	89.8	63.8	26.4	76.0	21.9
	비전문직	22.9	91.4	64.7	26.4	73.3	26.7

3. 프리랜서 부당대우 상황

- 기존 연구나 실태조사에서는 프리랜서의 계약 관계, 보수 지급, 인권 상황 등에서 불합리한 상황과 부당대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었음. 2020년 설문조사 대상자 중 ‘부당대우’ 유경험

은 △계약 및 이행 부당대우 32.5%, △보수지급 관련 부당대우 31.0%, △인권침해 10.7% 였음. ‘계약거래 불공정’ 유경험은 △계약 조건 이외의 작업 요구 29%, △작업 내용의 부당한 변경 23.8%, △부당한 지속적인 작업 수정 요구 21.4%, △일방적 계약해지 19.4%, △불공정 계약 조건 강요 14.1% 순임.⁸⁾

- ‘부당대우’ 유경험은 예술인형 프리랜서(계약 이행 부당대우 40.6%, 보수지급 부당대우 44.9%)가 높았고, ‘계약거래 불공정’ 유경험은 개인사업자형 프리랜서(불공정 계약조건 강요 40%, 부당한 지속적인 작업수정 요구 40.8%)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7〉 프리랜서 부당대우 각 형태별 유경험 상황 I (단위: %)

		부당대우			계약거래 불공정					
		계약 및 이행 부당대우	보수지급 관련 부당대우	인권침해 경험	불공정 계약조건 강요	계약조건 외의 작업 요구	작업 내용의 부당한 변경	부당한 지속적인 작업수정 요구	계약 기간 일방적 연장	일방적 계약 해지
전체		32.5	31.0	10.7	14.1	29.0	23.8	21.4	9.8	19.4
노동형태	예술인형	40.6	44.9	14.5	15.9	35.4	26.0	24.5	20.5	28.9
	특수형태고용형	30.1	28.4	10.6	13.1	27.8	21.0	13.5	9.3	19.7
	플랫폼노동형	33.1	34.9	17.1	21.3	23.5	24.1	20.4	11.2	17.4
	독립자유계약형	32.1	29.5	7.1	10.6	29.4	25.6	25.4	7.2	18.8
	개인사업자형	36.3	27.5	7.5	15.0	40.0	26.7	40.8	9.3	16.7
직업	관리전문직	34.6	32.9	8.9	13.1	30.2	22.9	24.1	9.9	18.4
	비전문직	27.4	26.4	14.7	16.7	25.8	25.9	14.4	9.4	22.0
성별	남성	31.1	31.7	10.0	13.4	26.2	23.9	18.6	9.4	21.1
	여성	33.2	30.6	11.0	14.5	30.4	23.7	22.9	10.0	18.5
부업	투잡	37.2	39.3	13.0	16.4	29.7	25.1	21.8	13.8	21.0
	전업	30.9	28.2	9.9	13.2	28.7	23.3	21.2	8.3	18.8

○ ‘보수 지연·미지급’ 유경험은 △계약된 보수 지연 지급 30.6%, △프로젝트 연장 추가 보수 미지급 14.2%, △계약된 보수의 일방적 삭감 13.9%, △계약된 보수 미지급 11.9%, △과도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 지불 요구 6% 순임. ‘폭언·폭행·성희롱·괴롭힘 유경험’은 △폭언 13.2%, △괴롭힘 10.2%, △성희롱 4.3%, △폭행 1.6% 순임.

- ‘보수 지연·미지급’ 유경험은 예술인형 프리랜서(계약된 보수 미지급 54.9%, 프로젝트 연장 추가 보수 미지급 27.3%, 정산자료 미공개 20.5% 등)가 높았고, ‘폭언·폭행 등’ 유경험은 플랫폼노동형 프리랜서(폭언 20.7%, 괴롭힘 14.2% 등)가 높았음.

8) 계약 형태는 근로계약(32.2%), 위탁계약(28%), 기타(23.4%) 순으로 나타났음. 노동형태별 주된 계약형태는 예술인형은 근로계약(28.1%), 특수고용형은 근로계약(39.2%), 플랫폼형은 근로계약(32.3%), 독립자유계약형은 위탁계약(30.9%), 개입사업자형은 위탁계약(43.2%)으로 나타났음.

〈표 8〉 프리랜서 부당대우 각 형태별 유경험 상황II(단위: %)

		보수 지연·미지급					폭언폭행·괴롭힘				
		계약된 보수 미지급	계약된 보수 지연 지급	계약된 보수의 일방적 삭감	계약 불이행 과도한 위약금/손 해배상 지불 요구	정산 자료 미공개	프로젝트 연장 추가 보수 미지급	폭언	폭행	성희롱	괴롭힘
전체		11.9	30.6	13.9	6.0	14.3	14.2	13.2	1.6	4.3	10.2
노동형태	예술인형	17.0	54.9	19.6	4.9	20.5	27.3	14.9	4.3	8.5	17.0
	특수형태고용형	10.2	27.2	15.6	8.8	12.9	13.7	13.2	1.3	5.0	10.3
	플랫폼노동형	10.1	28.2	14.3	5.5	19.6	13.8	20.7	2.9	4.9	14.2
	독립자유계약형	12.7	29.4	11.0	4.1	13.2	12.2	8.5	1.1	2.6	7.7
	개인사업자형	16.0	33.3	12.2	2.4	7.1	13.0	13.0	0.0	2.3	4.5
직업	관리전문직	12.7	32.9	12.8	5.1	15.3	15.8	10.7	1.4	3.9	9.4
	비전문직	10.0	24.5	16.8	8.3	12.0	10.2	19.0	2.2	5.5	12.2
성별	남성	15.4	33.1	15.7	7.1	16.1	16.7	12.9	1.8	2.3	7.4
	여성	10.0	29.2	13.0	5.4	13.3	12.8	13.4	1.5	5.5	11.8
부업 여부	투잡	13.1	33.7	18.6	9.9	21.1	17.7	14.2	2.4	7.1	11.1
	전업	11.5	29.4	12.2	4.5	11.6	12.8	12.8	1.3	3.3	9.9

○ 프리랜서 이해대변 기구 필요성은 노동조합(35.2%)과 협회(33.8%), 온라인 커뮤니티(21.7%) 등 다양한 의견이 확인되고 있음. 다만 특수고용형 프리랜서는 ‘노동조합’(41.8%)이 높았고, 플랫폼노동형 프리랜서는 ‘온라인 커뮤니티’(28%) 의견이 높게 나타났음. 예술인형 프리랜서는 이미 직종별로 다양한 협회가 활성화 되어 있어 이해대변기구에서 ‘협회’(40.6%) 의견이 높았음.

〈표 9〉 프리랜서 이해대변 기구 필요성 의견(단위: %)

		노동조합	협회	온라인 카페 등 커뮤니티	협동조합	기타
전체		35.2	33.8	21.7	8.1	1.1
노동 형태	예술인형	27.5	40.6	24.6	7.2	0.0
	특수형태고용형	41.8	35.0	15.2	7.2	0.9
	플랫폼노동형	38.9	24.6	28.0	7.4	1.1
	독립자유계약형	29.5	35.6	25.0	8.0	1.9
	개인사업자형	27.5	36.3	21.3	15.0	0.0
직업	관리전문직	31.9	34.3	24.2	8.2	1.3
	비전문직	43.2	32.5	15.8	7.9	0.7
성별	남성	36.7	31.4	23.8	7.0	1.2
	여성	34.5	35.1	20.7	8.7	1.1
부업 여부	투잡	36.4	30.0	25.1	6.9	1.6
	전업	34.8	35.1	20.6	8.5	0.9

- 프리랜서의 제도적·정책적 주요 영역별 개선과제(15개) 의견은 △법률지원 시스템 마련(81.1점), △경력인정 시스템 마련(80.8점), △표준계약가이드 마련(78.1점), △세무상담지원(77.5점), △근로자성 인정(77.3점), △사회보험 지원(76.8점), △시장 모니터링(74.2점), △계약 및 업무수행 지원(71.2점) 등의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음.
- ‘특수고용형’은 표준계약 가이드라인(83점)과 사회보험 지원(80.3점)이 높았고, 여성은 법률지원시스템(81.8점)과 경력형성 시스템 마련(78.6점)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투잡’ 프리랜서는 상대적으로 계약 업무 지원, 세무상담 지원, 사회보험 지원 등의 필요성이 높았고, 저소득 프리랜서는 작업공간과 경력형성 지원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음.

〈표 10〉 프리랜서 제도 및 정책 개선 필요도 의견(단위: 0점~10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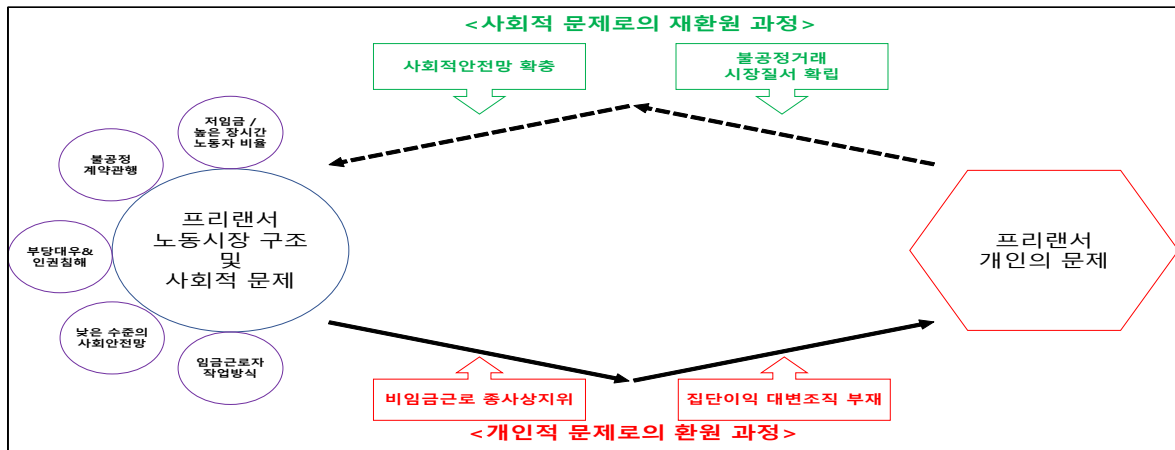
		계약방식 개선 지원				프리랜서 업무 지원					프리랜서 단체지원		인식개선		교육훈련	
		표준계약 가이드라인	법률지원 시스템	시장 모니터링	공공기관 공개채용 운영	계약 및 업무수행 지원	4대 사회보험 지원	작업장 지원	심리상담 지원	세무상담 지원	사회적협약기구 구성	프리랜서 단체 지원	프리랜서 인식개선 캠페인	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	경력인정 시스템 마련	교육훈련 주관
전체		78.1	81.1	74.2	62.3	71.2	76.8	68.0	69.4	77.5	70.1	69.9	70.7	77.3	80.8	67.6
성별	남성	76.6	79.8	73.2	62.2	70.2	76.2	68.4	66.7	75.0	68.9	70.1	69.9	76.1	78.6	66.4
	여성	78.9	81.8	74.7	62.4	71.8	77.1	67.9	70.9	78.8	70.8	69.8	71.2	78.0	82.0	68.3
소득	100만원미만	76.6	80.2	73.0	60.5	69.5	74.1	69.1	67.7	76.5	67.9	68.8	70.2	77.7	81.2	65.9
	100~200만원미만	80.6	81.7	74.9	64.7	70.6	79.0	66.9	68.6	77.2	71.3	71.3	69.5	78.4	79.9	70.2
	200~300만원미만	78.9	81.1	74.3	63.1	74.9	77.9	67.5	72.6	79.9	71.8	70.3	72.6	76.4	80.2	68.7
	300~400만원미만	77.4	81.2	76.8	63.5	72.8	80.2	69.4	70.6	78.8	73.4	71.2	73.0	77.6	81.9	66.7
	400만원이상	75.0	81.3	71.3	57.5	66.3	73.0	65.0	66.8	73.3	63.8	65.3	67.0	74.3	80.0	65.0
부업여부	투잡	79.6	82.8	75.2	63.6	73.7	78.4	70.4	70.5	78.8	71.3	71.3	71.6	80.0	82.0	69.1
	전업	77.6	80.6	73.8	61.9	70.4	76.3	67.2	69.1	77.0	69.7	69.4	70.5	76.4	80.5	67.1
노동형태	예술인형	83.0	84.1	80.4	64.9	77.2	76.8	69.9	74.3	83.0	73.9	71.4	73.9	79.7	84.1	61.6
	특수형태고용형	79.9	82.1	75.3	63.0	73.6	80.3	68.9	71.1	77.6	71.8	70.9	73.1	79.5	82.2	69.5
	플랫폼노동형	77.3	81.1	72.3	63.0	71.0	74.7	66.0	68.9	76.9	70.4	70.9	69.3	76.3	78.9	68.9
	독립자유계약형	76.5	80.5	72.8	60.6	67.7	74.8	67.0	67.3	76.2	68.3	67.9	69.0	75.2	80.0	66.3
	개인사업자형	74.1	76.6	73.1	62.2	69.7	74.1	71.3	67.5	78.8	66.3	69.4	67.5	76.3	80.0	67.2
직업	관리전문직	78.1	80.8	74.2	61.5	71.5	76.3	68.0	69.0	78.2	69.6	69.7	70.1	77.2	81.1	66.7
	비전문직	78.2	81.8	74.1	64.2	70.5	78.0	68.2	70.5	75.7	71.3	70.4	72.3	77.5	80.2	69.9

IV. 맺음말

- 최근 산업구조와 기술발전 과정에서 비표준적 계약과 고용 즉, ‘고용 다변화’라는 흐름 속에서 기존의 임금노동자와 다른 형태의 일자리 증가 현상이 확인되고 있음. 특히 프리랜서의 노동시장 불안정성이나 위험 및 부당대우는 비임금노동자로 구분되어 그간 개인의 문제로 취급되었음.

- 무엇보다 프리랜서 일자리 다수는 소득 불안정성이 높고, 표준적인 계약 및 노동 규율이 부재한 상황임. 저소득 프리랜서일수록 비경제활동이었거나 비정규직 유경험자가 많았었음. 이는 노동이동을 통해서 저소득 지위를 벗어나기 어려운 한국 자영업 노동시장 구조와 비슷한 현상이 확인됨.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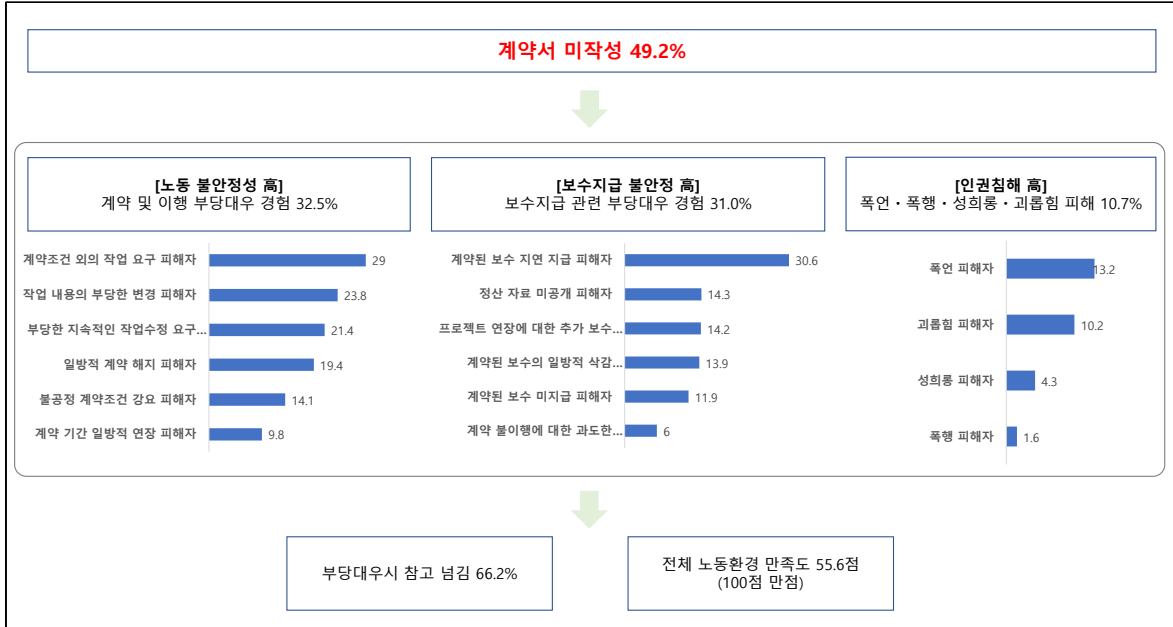
[그림 3] 프리랜서 노동문제 개인화 및 사회화 환원과정



- 이 글에서 검토한 ‘프리랜서’의 노동상황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와 맥을 같이 하고 있음. 그동안 노동법률이나 사회적 보호가 임금노동자 중심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독립노동자나 프리랜서 형태의 일자리는 제도 밖의 노동의 한 형태로 치부된 상황이었음.
- 특히 계약 및 작업 과정에서의 부담대우나 인권침해 현상은 임금노동자와 비교해서 사전적·사후적 어떤 제도적 구제나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차이가 있음. 표준적 노동 기준이 부재한 프리랜서 노동시장에서 ‘전문직’ 형태보다는 ‘비전문직’ 형태의 일자리가 플랫폼과 맞물려 증가하고 있는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음.

9) 코로나19 시기 정부는 특고·프리랜서 소득 지원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4차례 지원하고 있음.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프리랜서 일감 감소자 비율은 70.2%나 되었음. 노동형태별 일감 감소자 비율은 예술인형 79%, 특수형태고용형 76%, 플랫폼형 68%, 독립자유계약형 62%, 개입사업자형 75%임.

[그림 4] 프리랜서 부당대우 현황 및 노동현실



- 프리랜서의 다양한 노동유형(예술인형, 특수고용형, 플랫폼노동형, 독립자유계약형, 개인사업자형) 중 특수고용형태는 일터에서의 노동자성이 가장 높고, 작업장 통제도 높은 상황임. 이런 이유로 프리랜서 이해대변 기구 의향 중 노동조합이 높게 나타났음. 반면 예술인형 프리랜서는 계약 및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당대우 유경험이 가장 높았으나, 이해대변 기구로 협회 조직이 높게 나타났음.
- 결국 프리랜서 노동의 노동환경 개선 방향과 관련해서는 다양성과 이질성이 높은 집단 특성상 제도적·정책적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영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20년 전 특수고용노동자 제도적 보호 방안처럼 ‘전속성’이나 ‘주체의 요구’(집단)에 의한 정책 수용이 아닌, 사회적 보호의 차원에서 포괄적 정책(사회안전망, 표준노동기준, 결사의 자유 등)을 모색할 시점으로 판단됨.

[별첨자료1] 프리랜서 주요 설문조사 결과 요약(2020)

구분	설문조사 결과 요약
일경험 및 준비	일경험 ■ 임금 정규직(36.1%), 일경험 없음(32.8%), 비정규직(19.9%) 순
	프리랜서 선택 이유 ■ 자발적 54.9% (가사노동 병행 6.5%+수입증대 1.8%+고소득 일자리 3.7%+자유로운 시간활용 39.7%+일거리 찾기가 쉬워서 3.2%+학업 등을 위한 임시일자리 1.6%) ■ 비자발적 42.2% (조직 생활 미적응 6.8%+직업특성 22.5%+임금노동자 일자리 부족 8.1%+건강상문제 2.6%+기타 0.6%)
	자격증 필수 여부 ■ 31.3% 국가 및 민간 자격증이 꼭 필요 (국가공인 자격증 필요 17.7%, 민간자격증 필요 13.6%)
	사업자등록증 발급 현황 ■ 15.7% 발급
계약 방식	계약 방식 ■ 월(月) 단위 계약자 58.8% ↔ 일·건 단위 계약자 41.2%
	일감 발주처 ■ 1인 고객(29.5%) → 개인 사업체(사무소 등)(18.2%) → 소규모 기업(10인 미만)(16.4%) → 중소기업(15.7%) → 공공기관(12.4%) → 대기업(7.7%)
	계약 업체 ■ 발주기관&일하는 곳 72.8% ■ 에이전시 등 일감 주주업체 26.2% → 에이전시로부터 업무수행관련 교육 경험 60.9%
	계약서 작성현황 ■ 계약서 작성 50.8%(근로계약 32.2%, 위탁계약 28.0%) ■ 계약서 미작성 49.2%(구두로 합의 57.9%, 업계관행 38.6%)
	종사상지위 인식 ■ 본인이 지시받은 대로 일하고 보수를 받는 '근로자' 47.9% → 발주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18.9% → 발주업체와 함께 협력하는 '파트너' 32.0%
	일감 수주 방식 ■ 대면계약 81.5%(지인 및 개인 네트워크 이용 46.3%) ↔ 비대면계약(플랫폼 계약) 18.5%
	일감 선택시 중요 요인 ■ 보수(47.2%) → 업무 내용(26.3%) → 작업기간(10.7%) → 작업강도(4.2%) → 거래처(4.1%)
작업 방식	일 수행 방식 ■ 단독수행 61.9% ■ 팀 작업: 38.1%(동료들과 팀을 이루어 진행하지만, 독립적 업무 수행 19.1%+동료와 팀 이루고, 협업 수행 6.1%+동료와 팀 이루고 있지만, 상황 따라 협업/독립 업무 수행 12.9%)
	일의 형태 ■ 한 번에 하나씩 순차적으로 진행(42.7%) → 동시에 여러 일 진행(40.3%) → 1년에 1개 진행(17.0%)
	작업공간 ■ 개인 소유 작업장 48.8% / 발주처·고용업체 작업장 37.7%

구분	설문조사 결과 요약	
노동 조건	보수 지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과정과 보수지급 일정 불일치 → 불안정 보수 지급 방법 56.8%(작업 완료 후 전액 지급 39.5% + 결과물로 발생한 수익의 일정 비율 분배 17.3%)
	세금 납부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처 원천징수 59.9% / 세금계산서 발급 5.8%
	월평균 소득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평균 183만원(정규직 임금노동자의 54.5%수준) ■ 2020년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약 105만원) 미달자 약 33.6%
	노동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주일 평균 노동시간 33.3시간 ■ 52시간 장시간 노동자 16.0%(↔정규직 5.2%)
부당 대우 및 사회 안전	부당대우 피해경험 및 대처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대우 및 인권침해 경험자 43.5%(계약 및 이행 부당대우 경험비율 32.5%, 보수지급 관련 부당대우 경험비율 31.0%, 인권침해 경험비율 10.7%) → 부당대우 시, 66.2% 그냥 참고 견뎌
	의사대변 시 필요 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조합 35.2%, 협회 33.8%
	사회 안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 가입 9.7% / 국민연금 가입 35.9% / 건강보험 가입 73.6% / 산재보험 가입 24.8% ↔ 민간보험 가입 76.6% ■ 지난 3년간 현재 일로 인해 정신질환 관련 병원치료 경험 4.0% → 82.1% 치료비 자비 부담 ■ 지난 3년간 현재의 일로 인해 신체적·육체적 질환 관련 병원치료 경험 20.4% → 96.0% 치료비 자비 부담
노동 환경 및 필요 정책	노동환경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 2개 항목: 자율성 및 권한 만족도 67.6점, 적성 및 흥미 일치도 64.6점 ■ 하위 2개 항목: 직업 안정성 만족도 38.6점, 보수 만족도 45.1점
	프리랜서 정책 필요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 6개 항목 : 법률지원 시스템(81.1점), 경력인정 시스템 마련(80.8점), 표준계약가이드(78.1점), 세무상담지원(77.5점), 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77.3점), 사회보험 지원(76.8점) ■ 하위 6개 항목 : 공공기관 중개업체 운영(62.3점), 교육훈련 주관(67.6점), 작업장 지원(68점), 심리상담지원(69.4점), 프리랜서단체지원(69.9점), 사회적 협의기구구성(70.1점)
코로나19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2% 일감 감소 경험 → 29.1%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지역고용특별지원금 수혜 	
향후 일자리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 잠재적 실직자 13.7% : 프리랜서 노동시장 지속 불가능 예상 27.5% + 이직 희망자 28.5% ■ 이직 시 원하는 종사상 지위 : 정규직 54.2% → 자영업 20.5% → 비정규직 13.9% → 프리랜서 11.4% 	
부업활동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업 중인 프리랜서 25.1% ■ 부업 이유: 소득보충(40.5%), 불규칙한 소득(38.5%), 일이 흥미로워서(8.5%) → 부업 프리랜서 중, 부업 노동시간이 주업 노동시간보다 많은 프리랜서: 65.6% 	

[별첨자료2] 프리랜서 유형별 사례조사 요약

[부표1] 프리랜서 사례조사 요약 - 전문직업형

		CS강사	평생교육 강사	보컬강사	요가 필라테스 강사
서비스업무 제공내용		기업체 직무 서비스 훈련/고객 응대 서비스 교육	평생교육기관에서 담당 과목의 강의 및 학습자 지도	보컬(목소리) 관련 기술 교육 훈련 제공	요가 및 필라테스 수업 제공
주된 거래처		기업 및 공공기관	공공부문/민간부문 평생교육기관	실용음악학원, 기획사, 개인 고객	헬스 센터, 요가 및 필라테스 센터, 공공체육시설
직업 업무 수행	자격증 필요성	△ (민간 자격증)	△ (분야별 상이)	△ (업무별 상이)	○ (민간 자격증)
	사업등록증 필요성	×	×	×	×
해당 업계 규모	2019년 지역별고용 조사 1인 자영업자 [한국표준직 업소분류]	210천 명(5.14%) [문리, 기술 및 예능 강사(254)]	1천 명(0.03%) [기타 교육 전문가(259)]	210천 명(5.14%) [문리, 기술 및 예능강사(254)]	27천 명(0.66%)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286)]
	실태조사자료 직능단체공고	-	-	직종별 사업체조사(214 문리·기술·예능강사) 120,139명('20)	지역별고용조사(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강사) 2019년 기준 약 14만 2천명
인구학적 속성		여성 다수	여성 다수	20대~30대	20대~40대
일감 수행 방식		에이전시 계약 / 기업체·공공기관 제공 작업장 일 수행	평생교육기관 계약 후 담당 과목 강의 및 학습자 지도	학원 및 기획사 출강, SNS, 플랫폼 중개 등	시설 및 센터 계약 후 고객 대상 요가 및 필라테스 수업
표준계약		없음	정부, 지자체 계약서 활용	표준계약서 없고, 대부분 구두계약	사용하지 않으며 공공시설의 경우 자체 계약서 사용
전업, 부업 형태		전업 다수	전업, 부업 혼재	전업, 부업 혼재	전업 다수
설문조사 노동상황	경력기간	6.7년(기타 강사)	3.2년(교육 전문가)	10년(예능강사)	5.4년(스포츠레크리에이션)
	월소득	171만원	150만원	118만원	175만원
	노동시간	18.3시간	40시간	18.4시간	28.6만원
소득 (월평균)		월 300만원 이내 (코로나 이전 150~400만원) 평균 171만원(실태조사결과)	월 100만원 이내 (코로나19 이전 월 250만원)	100~300만원 (코로나 이전 180~700)	월 100만원 이내 (코로나 이전 200~900만원 ※강사에 따라 편차 있음)
수수료 (100%)	중개업체 (에이전시)	10~40%	×	중개 플랫폼 평균 20%, 학원 평균 50%	×
	프리랜서	90~60%	×	중개 플랫폼 평균 80%, 학원 평균 50%	×
보수 수수료 가입료		경력별·학력별 보수 편차 에이전시 이용 수수료 가입료 없음	지자체별 강사 단가 상이 평균 시간당 2~3만원	강사별 보수 편차 심함. 학원:강사 수익 비율 평균 5:5 수업 당 시급 2만~10만	■ 공공시설 6:4 또는 5:5비율 수강생 당 6만~7만원 ■ 민간시설 시간당 2만5천~3만5천
근무요일 노동시간		성수기/비수기(1·7·8·12월) 존재 → 특정불가(최대 7일·50시간 이상 / 최소 0일·0시간) 주 18.3시간(실태조사결과)	주 4~5일 근무 하루 4~6시간 강의(2~3시간 준비)	자율. 전업 주 평균 25시간 부업 주 평균 10시간	■ 한 타임 1시간 수업 제공, 하루에도 여러 기관에 수업을 제공하여 주로 주5일 근무 오전 오후
사회보험 가입	고용보험 가입	×	×	×	×
	고용보험	전국민고용보험 필요	가입 필요성 인식 있음.	전국민고용보험 인식 ↓	긍정적, 보험료 부담도

		CS강사	평생교육 강사	보컬강사	요가 필라테스 강사
	인식	(조사결과: 가입 70.6%)	본인 보험료 정부 지원 시 가입 의향 가장 높음.	가입 필요성 인식 보험료 자부담 부담 가능, 소득 일정수준 이하는 정부지원	느끼지 않는 편
	소득 상실 해결	부업 / 비상금 사용 / 배우자 소득으로 생활	기존 저축 및 다른 부업 활용	기존 저축 활용 및 다른 부업 활동	수업 대타 또는 기존 저축 및 대출
교육 훈련		(無)개인 스스로: 사설 교육기관 이용 40~100만원	없음. 개인 스스로	대학	(無)개인 스스로
이해대변기구 (노조, 협회)		(사)한국서비스진흥협회: 자격증 발급 기관 업무 차중 → 실질적 권익보호 활동 無	인천평생학습강사회	없음	없음
제도 요구		표준계약 정착 권익보호 기관 및 제도 마련 필요	평생교육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강사수당 현실화	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소득 증빙 등) 표준단가 및 계약 정착 음악교육시장 확대 및 진흥 보컬강사 역량 강화-전문화	실업 기준 완화

[부표2] 프리랜서 사례조사 요약 - 자유직업형

		통역사	타투이스트	베이비시터	펫시터
서비스업무 제공내용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업무 회의, 협상, 세미나 등 외국어 의사소통 내용 전달	염료 넣은 바늘 및 머신 사용하여 고객 요청에 따라 피부에 그림이나 글씨를 새기는 작업	영유아 및 아동 대상 식사, 등하교 지원, 돌봄관련활동, 놀이활동 등 양육 보조역할 수행	주인 대신 반려동물 식사, 목욕, 배변처리, 산책 등의 케어 활동 지원
주된 거래처		개인 고객 에이전시	타투작업 신청한 고객	개별 가구	개인 고객 펫시팅 전문 중개업체(플랫폼) : 와요/펫플래닛, 도그메이트, 우우 등 기타 가사 및 재능판매플랫폼
직업 업무	자격증 필요성	x	x	x	-
	사업등록증 필요성	x	x	x	x
해당 업계 규모	2019년 지역별고용조사 1인 자영업자 [한국표준직업 소분류]	33천 명(0.82%)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281)]	183천 명(4.47%)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422)]	21천 명(0.52%) [가사 및 육아도우미(951)]	30천 명(0.74%) [기타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 종사자(429)]
	실태조사자료 직능단체공고	업종 7만5천명	20,000여명 (‘19, 한국타투협회 조사)	해당업계 30만~60만(가사노동자협회 추정)	5,180명 (‘19, 동물위탁관리업)
인구 학적 속성		30대~40대 (여성 다수)	20~40대 (주 20대 청년)	50- 60대 경력단절 여성	30~40대 기혼 여성
일감 수행 방식		개인 고객 및 에이전시와 계약 후 해당 프로젝트에서 통역 업무 진행	SNS 각 타투이스트 제공 양식 따라 고객이 신청 방식, 신청 따라 그림 및 글씨 정하고, 당일 타투 작업 진행	플랫폼 통해 직접 가정과 연결 또는 협동조합 통해 일거리 중개	개인이 직접 또는 중개업체(플랫폼) 통해서 반려동물 주인과 계약 서비스 제공
표준계약		표준계약서 없음 비공식 형태 계약 활용		없음 (협동조합 자체 계약서 사용)	[개인] 계약서 부재 [중개업체] 자체 계약서 존재
전업, 부업 형태		전업, 부업 혼재	전업 및 부업 혼재	전업이나 생계부양자 아니라 스스로 부업으로 인식	부업의 경우가 다수이나 전업 활동 혼재
설문 조사	경력기간	8.5년(통번역가)	2.7년(그외 미용종사)	3.8년(육아도우미)	1.7년(반려동물관리)
	월소득	150만원	206만원	171만원	99만원

		통역사	타투이스트	베이비시터	펫시터
노동 상황	노동시간	25.1시간	34.6시간	39시간	15.3시간
	소득 (월평균)	월 150만원 (코로나19 이전 월 300만원)	10년이상: 250~1000만원 등 인지도 따라 다양 10년미만: 150~200만원	월 100~200 만원 (주5일 기준)	전업 200만원 부업 100만원 미만
수수료 (100%)	중개업체 (에이전시)	15~50%	x	협동조합: 10% 플랫폼: 월 25000원	20~25%
	프리랜서	50~85%	x	x	70~75%
	보수 수수료 가입료	경력, 언어에 따라 통역사별 보수 편차 큼 대다수 월평균 2~300만원	시간당 30~40만원 타투 크기 따라 건당 가격 책정 (최소 5만원~최고100만원)	시간당 1만원~1만5천원 지역 및 담당 아동 수에 따른 차이 존재	방문: 시간당 2~3만원 위탁: 하루 2~5만원
	근무요일 노동시간	주 4~6일 근무 하루 6~9시간 통역 (2~3시간 준비)	평균	종일제 : 하루 8시간 이상 시간제: 하루 3~5시간	별도 요일/시간 無 업체 따라 소속 펫시터에게 월 일정기간(20일 이상) 활동규정
사회보험 가입	고용보험 가입	x	x	x	x
	고용보험 인식	가입 필요성 인식 본인 보험료 정부 지원 시 가입 의향 높음	필요성 느끼지만 현행법상 어려움 호소	필요성 못 느낌	필요성 느끼나 보험료 부담감
	소득 상실 해결	기존 저축 및 다른 부업 활용	가족 지원, 대출, 코로나 이후 아르바이트 부업 급증	굳이 하지 않음	[기혼자] 생계부양자의 소득 [전업자] 기존 모아둔 소득
	교육 훈련	없음. 개인 스스로	2~3개월 타투 기술 습득 후 독립. 독립 후 별도 교육 훈련 없이 자기계발	없음 (협동조합 월1회)	중개업체 교육프로그램 제공 업체 따라 별도 교육비 지불
	이해대변 기구 (노조, 협회)	한국통번역사협회 번역협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타투유니온지회(2020), 한국타투협회	사단법인 가사노동자협회, 공공운수노조, YWCA, YMCA,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 돌봄	펫시터 노조나 협회 조직 부재
	제도 요구	에이전시별 수수료 기준 표준화	직업 합법화 시급 소득 증빙 자료 청년 예술인 노동교육 작업 건당 가격 최소 및 최고 기준 표준화 필요, 최소/최고 기준 노동시간 정립 필요	[플랫폼] 보호 가능한 계약서 마련	[건강보험]프리랜서 활동/소득 감소 때 별해충증명서 발급 증빙문제 발생 프리랜서 고용특성상 해충증명서 발급 한계

[부표3] 프리랜서 사례조사 요약 - 특수고용 유사 직업형

		일러스트레이터	방송작가	패션 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	여행가이드
서비스업무 제공내용		웹소설 삽화 주간 연재 / 유튜브 썸네일 및 이모티콘 제작, 캐릭터 디자인 / 책 표지 디자인 등	방송 프로그램 구성 및 원고 작성	프리랜서 스타일리스트 실장 업무 보조, 의상 픽업 및 반납, 원단 및 악세사리 등 체크, 시안 작성, 해외출장, 촬영지 당일 스타일링 등	-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인 관광객 대상 관광안내 및 숙박, 식사, 쇼핑, 편의 제공 등 - 국외여행인솔사: 한국인 여행객의 국외여행 인솔 관리
주된 거래처		네이버 웹툰 / 게임방송 / 광고, 책, 잡지 등	방송사, 외주 제작사	소속사, 연예인, 브랜드 (가수팀, 배우팀, 영화팀)	여행사
직업 업무 수행	자격증 필요성	x	x	x	o (분야 자격증)
	사업등록증 필요성	x (가격협상력 차원 활용)	x	△(작업 공간 위해 일부)	x

		일러스트레이터	방송작가	패션 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	여행가이드
해당 업계 규모	2019년 지역별고용조 사 1인 자영업자 [한국표준직 업소분류]	37천 명(0.91%) [디자이너(285)]	33천 명(0.82%)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281)]	183천 명(4.47%)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422)]	76천 명(1.86%) [여가 서비스 종사자(432)]
	실태조사자료 직능단체공고	2017년 추계 국내 디자이너 수 333,042명	약 19,000명 (워크넷 '19)	서울: 6,222명 ('20 청년유니온 조사, 매니저업 기준) -500~1,000명 (온라인 단체 채팅방 기준)	관광통역안내사협회 등록: 2020년 12월 기준 3,691명/월 회비 1만원 활동가) *자격증 취득현황 관광통역안내사: 누적 34,545명 (20.12 기준) 국외여행인솔자: 누적 77,458명 (20.12.기준)
인구 학적 속성		20대~30대 (여성 다수)	20~30대 (여성 다수)	20대 미혼 여성 다수	40~50대가 많음 (연령제한 없음)
일감 수행 방식		작품별 연재계약 제안 받음 or 플랫폼 기업 개인 투고 or SNS 활용(블로그,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지인소개, SNS, 구인구직 사이트 등	스타일리스트 (실장)은 일감을 받고, 회의한 스타일 및 스케줄 따라 컨셉에 맞는 소품 준비, 픽업, 당일 스타일링. 이후 반납 및 수선 등 마무리 작업까지 포함	여행사 배정 or 인맥
표준 계약		정부 표준계약 거의 미사용 / 용역위탁계약 많음 (매질의주계약형태)	정부 표준계약서 존재하나 거의 미사용, 구두계약	없음	협회 표준약관 있으나, 거의 미사용(중국: 전담여행사가 단체관광객 받는 조건으로 여행사와 관통시간 표준계약서 체결. but 관통사는 계약서 사본 미수령)
전업, 부업 형태		전업, 부업 혼재	전업 다수	전업	전업, 부업 혼재
설문조 사 노동상 황	경력기간	4년(사각디자이너)	6년(작가)	19.1년(패션 코디네이터)	3.2년(여가관광서비스)
	월소득	99만원	163만원	470만원	167만원
	노동시간	30.4시간	36.4시간	35시간	57.8시간
소득 (월평균)		월 150만원	연차별 180~350만원	월 80~100만원	월 300만원 (코로나19 이전)
수수료 (100%)	중개업체 (에이전시)	20% / 12% / 6% (구간별 차등 수수료 부과: 크몽 등)	x	x	x
	프리랜서	80%	x	x	*판매수수료 받는 구조
보수 수수료 가입료		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조합비 월 1만원)	작가별 보수의 편차가 심함. 관행상 주급=연차×10 (막내작가는 최저임금 적용)	월 급여 80만원~90만원 급여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회비 월 1만원
근무요일 노동시간		자율 (노동시간, 근무요일이 작가 개인 따라 천차만별) 노동시간 하루 7~8시간(개인별로 주말 쉬도록 노력)	프로그램 방영 요일 따라 다양(주 평균 60시간 전후)	평균 6일 평균 아침 8시~새벽 (불분명한 편이나, 12~15시간 이상의 노동시간)	- 관광통역안내사: 오전8시~저녁8시 - 국외여행인솔자: 밤낮없이 여행객 응대(노동시간 개념 없음)

		일러스트레이터	방송작가	패션 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	여행가이드
사회보 험 가입	고용보험 가입	x	x()	x	x
	고용보험 인식	산재보험에 비해 고용보험 필요성 못 느낌	고용보험 필요성 인식 ↑ 보험료 자부담 가능,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 시 정부지원	필요성 느끼나 소득증빙 어려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필요성 느낌
	소득 상실 해결	다른 부업 활동 및 2~3개 작품 동시작업을 통해 소득단절구간을 메꿈	기존 저축 활용 및 다른 부업 활동	가족(부모님) 지원, 패션어시 그만 둔 후 아르바이트(이후 패션어시 재진입)	기존 저축 활용 or 휴식, 다른 일 알아봄
교육 훈련	학원 및 유튜브 동영상 등 활용 (개인)	주로 대학, 방송 아카데미	민간 자격증, 유관학과 있으나 진입시 무관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여행업협회 통해 훈련 받음	
이해대변기구 (노조, 협회)	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한국방송작가협회 방송작가유니온	청년유니온 패션 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 지부(2020), 한국스타일리스트협회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제도 요구	표준계약서 활용 및 매절외주계약 형태 근절 공식 표준단가 기준 마련	표준 공정계약 정착 임금데이블 개편 유노동 무임금 관행 폐지 고용불안정 해소	소득증빙 방법 표준계약서 작성 스타일리스트 실장 노동교육, 인센티브 제도 등 민간자격증 및 학과 자격 등의 실효성 증진 최저임금 준수 시급	서면 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위 획득 요청	

[별첨자료3] 주요 광역 지방정부 프리랜서 보호 관련 조례 비교 검토(2020)

	서울	부산	경기	전남	광주	충남	대전
조례 명칭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2018.10.04.)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2020.07.15.)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2019.08.06.)	전라남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2020.08.06)	광주광역시 청년프리랜서 지원 조례(2020.9.28)	충청남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0.10.5)	대전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2020.10.14)
조례 목적	보수 및 고용방식, 계약조건 등과 관련하여 권익 침해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된 프리랜서 지원함으로써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유형 변화 따라 늘어나는 프리랜서 권익 보호 문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된 프리랜서 지원, 경기도 일자리의 질 높이고 고용약화와 일자리 유형 변화 따라 늘어나는 프리랜서 문제에 선도적 대처	권리 침해와 차별 해소 등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활동 지원, 지역 일자리 유형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	청년프리랜서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관계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프리랜서들이 보수 및 고용방식, 계약조건 등과 관련하여 권익 침해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으로써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
조례 정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적용받지 않고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사람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행하는 자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행하는 자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받지 않는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가 아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람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행하는 사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계약에 따라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조례 운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권익 보호와 지위향상, 안정적인 활동 등을 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계약상 부당 대우와 불공정거래 관행 보호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보호 조치 추진	종합계획 수립 시행 계획 수립 동등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권리, 부당 대우와 불공정 거래 관행 보호 받을 권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각종 지원 권익 보호 및 안정적인 활동 등을 지원	지원계획 수립 목표 및 방향, 부문별 추진전략청년프리랜서 보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계약상 부당 대우와 불공정거래 관행 보호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보호 조치 추진	기본계획 수립 권익 보호와 지위향상, 안정적인 활동 등을 지원
실태 조사	권익 보호 활동 지원 위해, 계약형태, 보수, 계약조건 등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	권익 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실태, 계약조건, 노동환경 등에 관한 실태	권익 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실태, 계약조건, 노동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	계약형태, 보수, 계약조건 등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	계약실태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계약실태, 계약조건, 노동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계약실태, 계약조건, 노동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
지원 센터 운영	부당 계약, 보수 지연지급,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 지원 위해 센터 설립운영	없음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센터 설치 운영	없음	없음	전담기구 설치 운영	없음

	서울	부산	경기	전남	광주	충남	대전
공정 거래 지침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과 계약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포함한 프리랜서를 개발하여 보급 적용	서면계약을 체결해 계약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업종별 표준계약서 제작	서면계약을 체결해 계약상 권리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업종별 표준계약서 제작	권익 보호 향상과 계약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프리랜서 공정거래 지침, 개발하여 보급 적용	별도 언급 없음	별도 언급없으나, 사회적 보호 및 권리(4조)에 포괄적 내용 포함	계약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작성
법적 보호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 지원(센터: 법률·세무·노무 상담 및 대응 지원,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대책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 무료소송을 지원	세무·노무 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 서비스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청년프리랜서를 위한 법률·세무·노무 상담 및 대응 지원청년프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청년프리랜서의 경력개발 지원	갑을 관계가 아닌 동등 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권리 부당 대우와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계약상 부당 대우와 불공정거래 관행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보호 조치 권익 보호 문화가 확산
단체 지원 기타	권익보호 위해 관련 사업 추진 기관과 단체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업종·지역·경력 등에 따라 연합한 프리랜서 단체가 프리랜서 권익 강화를 위한 활동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지원	권익보호 위해 관련 사업 추진 기관과 단체가 원활히 활동, 예산의 범위 행정적·재정적 지원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닌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사업을 추진	단체 기관 지원 (지방보조금 관리) 사업비 보의 일부 보조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자료 : 법제처 법령정보 시스템 내용 재구성